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, 최재란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, 위치정보사업자에게

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

공간정보 관리기관에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,

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의무와

사업자에 대한 보안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

공간정보 사용기업에 대한 보안심사를 수행하기 위한
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.

- 이는 공간정보 개방·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
2021년 3월 개정, 2022년 3월 시행된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

그 외에 2002년 11월 제정 이후,

2011년 7월 전부개정과 2015년 10월 일부개정 외에

오랜 기간 정비하지 못한 조례의 제호와 조문 체계, 일부 자구를
현실에 맞도록 정리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